

이사회 규정

1969. 01. 01. 제정 1971. 01. 29. 개정 1987. 10. 06. 개정 2002. 12. 16. 개정 2006. 12. 01. 개정 2012. 04. 17. 개정 2018. 04. 20. 개정 2020. 02. 25. 개정 2021. 10. 22. 개정 2022. 04. 26.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동아쏘시오홀딩스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이사회에 관한 기본사항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권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 3 조의 2 (대표이사 승계계획) <신설 2020.02.25>

회사는 대표이사의 승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에서 승인 받아야 하며, 승계계획 실행 시이사회는 승계절차 이행을 감독한다.

제 2 장 구 성

제 4 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사외이사 기타 비상근이사 포함)으로서 구성한다.

제 5 조 (의장)

- ① 이사회의 의장은 정관 제34조 제1항에 의거 이사 중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 <개정 2018.04.20>
- ② 의장 유고 시에는 정관 제34조 제1항에 의거 연장자 순으로 의장을 대행한다.
- <개정 2018.04.20>
- ③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신설 2018.04.20>

④ 이사회 의장의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04.20>

제 6 조 삭제 <2018.04.20>

제 3 장 회 의

제 7 조 (이사회의 종류) <개정 2018.04.20>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2월, 4월, 7월, 10월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8.04.20>
- ③ 임시이사회는 긴급한 의안이 있을 때 소집한다. <신설 2018.04.20>

제 8 조 삭제 <2018.04.20>

제 9 조 삭제 <2018.04.20>

제 10 조 (소집권자)

- ① 소집권자는 정관 제37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 의장으로 한다. <개정 2018.04.20>
- ② 삭제 <2018.04.20>
- ③ 의장 이외의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18.04.20>

제 10 조의 2 (소집절차) <신설 2018.04.20>

- ①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 1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6>
- ②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1 조 삭제 <2018.04.20>

제 12 조 (결의의 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정관 제38조 제1항에 의거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04.20, 2021.10.22>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04.20>
 - 1.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이용에 대한 사전승인
 - 2. 삭제 <2021.10.22>
 - 3. 삭제 <2021.10.22>
- ③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권을 대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8.04.20>
- ④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8.04.20>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20>
- ⑥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04.20>

제 13 조 (부의사항)

- ① 다음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주주총회의 소집
 -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 (3) 영업보고서의 승인
 - (4) 재무제표의 승인
 - (5) 정관의 변경
 - (6) 자본의 감소
 - (7)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 (10)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개정 2020.02.25>
 - (11)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 (13) 현금, 주식, 현물배당 결정
 -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15) 이사의 보수 <개정 2020.02.25>
 - (16) 삭제 <2021.10.22>
 - (17) 법정준비금의 감액
 - (18)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 2. 경영에 관한 사항
 -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 (2) 신규사업의 추진
 - (3) 삭제 <2018.04.20>
 -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5)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의 선임 및 해임
 - (6) 공동대표의 결정
 -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8)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10)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 (11)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12) 삭제 <2018.04.20>
- (13) 삭제 <2018.04.20>
- (14) 삭제 <2018.04.20>
- (15) 삭제 <2018.04.20>
- (16) 중요한 사규, 사칙의 제정 및 개폐
- (17)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 (18)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 (19)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 (20) 대표이사 승계계획의 승인 <신설 2020.02.25>
- 3. 재무에 관한 사항
 - (1)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기자본 100분의 10 이상인 시설투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4.20>
 - (2)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매출액 100분의 5이상인 단일판매 또는 공급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 <개정 2018.04.20>
 - (3)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유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 <개정 2018.04.20>
 - (4) 결손의 처분
 - (5)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인 출자 또는 출자 지분의 처분 <개정 2018.04.20>
 - (6) 신주의 발행
 - (7)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 (8) 준비금의 자본전입
 - (9) 전환사채의 발행
 -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11)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인 단기자금의 차입 <개정 2018.04.20>
 - (12)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인 담보제공, 채무보증, 채무인수, 채무면제 <개정 2018.04.20>
 - (13)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 (14) 자기주식의 소각
 - (15)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선급금 지급, 금전 및 증권의 대여, 가지급 결정 <신설 2018.04.20>
-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 (1) 삭제 <2021.10.22>
 - (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 (3) 타회사의 임원 겸임
- 5. 기 타
 -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 (3) 준법지원인의 임면, 준법통제기준 제정 및 개정 신설 2018.04.20>
 - (4)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04.20>
-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개정 2018.04.20>
 - 3. 준법지원인의 준법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결과 보고 <신설 2018.04.20>
 - 4.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상황 보고 <신설 2018.04.20>
 - 5.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4.20>

제 13 조의 2 (이사회 내 위원회) <신설 2018.04.20>

-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결의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회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다시 결의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재결의 할 수 없다.
- ③ 각 위원회의 구성 등 세부 운영방안은 각 위원회 규정에 따르며, 위원회 규정 개정은 이사회에서 하여야 한다.
- 제 13 조의 3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 후보자의 전문성 · 독립성) <신설 2020.02.25>
 - ① 이사회가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 후보자를 주주총회에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 1. 전문성 : 제약산업, 법률, 경영, 경제, 금융, 회계, 세무 등
 - 2. 독립성 : 상법 제 542조의11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기타 회사와의 이해관계

제 14 조 삭제 <2021.10.22>

제 15 조 삭제 <2018.04.20>

제 16 조 (관계인의 출석)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7 조 (직무집행감독권)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18 조 (간사) 이사회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둔다.

제 19 조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개정 2018.04.20>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개정 2018.04.20>
- ③ 의사록은 영구 보존한다.

제 20 조 (사외이사의 활동지원 등) <신설 2018.04.20>

- ①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직원이나 외부전문인력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외이사만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 21 조 (이사회 평가) <신설 2020.02.25, 2021.10.22>

회사는 매 사업연도 이사회 활동 및 개별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사업보고서 또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공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6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71.0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71년 1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7.10.0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87년 10월 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12.1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2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12.0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04.1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04.2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02.2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1.10.2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2.04.2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